

발전차액 설치의향서 신청접수 처리현황 및 주의사항 (2009.5.22 공지)

□ 접수 현황

- 발전차액 설치의향서 제출분을 검토한바, “2009년 연간상한용량”(태양광 : 50MW, 연료전지 : 12MW)을 초과하여 설치의향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설치의향서 제출분에 대하여 “2010년 연간상한용량” 해당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하고, 공사착공 증명서류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 2010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하고 있사오니, 설치 의향서를 제출한(할) 사업자는 사업 추진일정, 자금조달 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 * 설치 의향서 제출분에 대한 검토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사오니, 의향서 제출분에 대한 현황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통보는 서류 검토 확인 작업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

□ 처리 절차

정부 재정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주요 인허가 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 착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자에게 공사착공증명서류로서 “개발행위허가서(증)”를 “공사계약서”와 함께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토록 변경하여 시행코자 함.(2009.5.25 설치의향서 접수분부터 시행).

- 설치 의향서 제출분에 대해서는 **접수순에 따라**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접수증을 발급하고 공사착공을 증명하는 서류를(접수증 발급일 이후 7일 이내)을 제출한 분에 대해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합니다.
- 연도별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사업자는 공사기간내(태양광 3개월, 연료전지 6개월) 준공하여야만 해당연도(2009년분은 2009년, 2010년은 2010년)에 발전차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2010년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사업자도 선정일로부터**

공사기간내(태양광 3개월, 연료전지 6개월) 준공하여야만 발전차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2009년도에 2010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경우,
- 2009년 5월 18일 2010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8월 17일까지) 공단으로 발전차액 설치확인 신청(사용전안전검사필증 첨부), 설비준공일 ~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 시점까지 SMP로 판매하고 그 이후 발전차액 기준가격으로 지원

- 상기 절차에 의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경우
선순위 사업자가 포기, 해당 공사기간내 완료하지 못하여 “선정이 취소될 경우” 접수순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가 순위를 계승합니다.
- 특히, 상기 절차에 의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사업자도 부정한 방법(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기간산정 :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서 발급일~발전차액설치확인 신청일
- * 절차요약 : 의향서 접수-(검토)-접수증 발급(SMS 통보)-공사착공증명서류 접수-(검토)-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SMS 통보)-공사기간내 공사완료-사용전 검사-설치확인신청-설치확인 완료-발전차액 지원(해당연도부터)

□ 태양광발전사업 기준가격 변경 예정

- 태양광의 경우는 2010년부터 기준가격 보장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가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신규 기준가격은 금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후순위로 접수한(할) 사업자는 사업추진 일정, 자금 조달계획등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기사항

-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후 공사기간내(태양광은 3개월,연료 전지 6개월)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취소가 되므로 공사의 향이 없거나 공사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수한 후 취소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는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된 후 준공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발전차액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만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후 사업주의 요청(공단으로 공문발송)에 의하여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을 중도포기 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 25일 설치의향서 접수 사업분 부터 2차 서류 검토시 착공을 증빙하는 자료로써 공사 계약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해야합니다.
 - *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근거자료를 그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바랍니다.
- 상기 주의사항은 일부를 게시한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설치의향서 접수하시기전에 관련고시, 설명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